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안년월일 : 2007. 2.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법」(2005. 8. 4)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(2006. 10. 17)됨에 따라
- 지방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(1일당) 10,000원을 20,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제8조 제1항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[별표 1]의 지방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지교통비(1일당) 10,000원을 20,000원으로 조정.<[별표1]>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(제8조제1항과 관련)의 현지교통비
(1일당)란중 “10,000”을 “20,000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						
【별표1】 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8조 제1항관련) (단위 : 원)							
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일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
의장 부·의장 의원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10,000	46,000	25,000
비교 : 1.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 새마을호 특실, 2등실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.							

개정안							
【별표1】 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8조 제1항관련) (단위 : 원)							
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일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
의장 부·의장 의원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20,000	46,000	25,000
비교 : 1.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 새마을호 특실, 2등실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.							

[참고자료(개정전)]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의원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'95. 8. 14, 2006. 5.12>

제2조(의정활동비지급) ①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 <개정 '95.8.14, 2003.12.31>

②의정활동비는 매월 구미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3조(회기수당지급)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1,400,000원을 지급한다.<개정 '95. 8. 14 '96. 2. 21 2000. 3. 20>

②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.<개정 2000. 3. 20>

제4조(여비지급)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 <개정 '95. 8. 14>

제5조(여비의 종류)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, 일비, 숙박비, 식비로 구분한다.<개정 '95. 8. 14 '97. 3. 12>

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, 일비, 숙박료, 식비, 준비금으로 구분한다.

제6조(의정활동비 지급기준)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900,000원과 보조활동비 200,000원으로 한다.

<본조신설 '95. 8. 14> <개정 2000. 3. 20, 2003.12.31>

제7조(회의수당지급기준) <삭제>

제8조(여비지급기준) ①국내여비는 【별표 1】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②국외여비는 【별표 2】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구미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'95. 8. 1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'96. 2. 2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'97. 3. 1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0. 3. 20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타조례의 개정) 구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,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 개정한다.

부 칙 <2002. 7. 1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3. 12. 31>

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5. 9. 6 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6. 5. 12 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1】 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8조제1항관련) <개정 '96.2.21, 97.3.12, 2000.3.20, 2006.5.12>

(단위 : 원)

지급 기준액 구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현지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
시의원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<u>10,000</u>	46,000	25,000

비고 : 1.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 새마을호 특실, 2등실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※ KTX 운행구간에는 KTX 철도 운임 지급

【별표2】 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8조제2항관련)<개정 '95.8.14, 2000.3.20, 2003.12.31, 2006.5.12>

(단위 : 불)

지급 기준일 구분	항공임	일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식비 (1일당)	준비금		
					15일 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 이상
의장 · 부의장	1등정액	35	166	107	140	170	195
의원	2등정액	30	145	81	130	155	180